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‘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’은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8]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2-2-1 ~ 2-2-3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나, 같은 법 시행령 분류기준표(2-2-4 ~ 2-2-6)에 ‘직접적인’이라는 용어를 중복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순직자 분류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,

훈련 기간(준비·정비 기간 포함) 중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훈련 기간 중 적시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(별표 8)

- 1)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음.
- 2) 그러나, 질병 등으로 인해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잔류

하여 직무수행 중 소속부대의 훈련기간으로 인해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.

- 3) 이에 훈련기간 중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‘순직Ⅱ형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순직Ⅱ형의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도록 함.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의 순직Ⅱ형을 2-3-4, 2-3-5, 2-3-6의 기준 및 범위란 중 “직접적인”을 삭제한다.

순직 Ⅱ형	2-2-1	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·수색·매복·정찰활동·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(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,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 중 사망한 사람
	2-2-2	2-2-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(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,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 중 사망한 사람
	2-2-3	2-2-1 또는 2-2-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, 유격훈련, 주특기훈련, 그 밖에 유사시(有事時)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(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,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) 중 사망한 사람
	2-2-4	2-2-1, 2-2-2 또는 2-2-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
	2-2-5	2-2-1, 2-2-2 또는 2-2-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

2-2-6	2-2-1, 2-2-2 또는 2-2-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
2-2-7	2-2-1부터 2-2-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8의 순직Ⅱ형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	
연 락 처	(02) 748 - 3092